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박홍근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8090
----------	------

발의연월일 : 2017. 7. 19.

발의자 : 박홍근 · 신경민 · 정재호
박재호 · 이원욱 · 전현희
안규백 · 변재일 · 설훈
전혜숙 · 김병기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공제회에 관한 유사 법률에서는 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으나, 현행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 금지와 이에 따른 처벌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음.

최근 일부 단체가 부정한 목적으로 한국교직원공제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여 교직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건 등이 있었는바, 이와 같은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유사명칭 사용금지에 대한 실효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이에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의 사용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대한지방행정공제회와 동일 또는 유사한 명칭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고 대한지방행정공제회에 대한 신뢰를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6조 및

제25조 신설).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한지방행정공제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및 제2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u><신 설></u>	<u>제6조(동일 또는 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공제회가 아닌 자는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u>
<u><신 설></u>	<u>제25조(과태료) ① 제6조를 위반하여 대한지방행정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u> <u>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행정자치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u>